

17.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 · 시공지침 중 개정

통상산업부고시 제1997-171호 1997. 10. 24

주요 내용

제 4조(계량기등의 설치대상)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각 세대에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 미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적산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를 혼합하여 설치 할 수 없다.

2. 제1호에 의하여 세대별 난방온수미터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각 동별 총사용열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동별로 매인 적산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5조(공동주택 설계시 준수사항) 제2항제1호 중 “감온부는”을 “감온부와 난방온수비터의 유량부는”으로 하고,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세대온수분배기는 개·보수시 분해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장소에 충분한

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6조(계량기, 온도조절기 설치 · 시공자의 선정기준)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설치 · 시공하여야 한다.

제 6조(계량기, 온도조절기 설치 · 시공자의 선정기준) 제3항제1호중 “하자보수책임 기간”을 “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 일을 기준으로”로 하고, 제2호 중 “난방기에는”을 “난방기 및 제1호에 의한 제품 보증기간내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월평균 고장율이 5% 이상일 때는”으로 “제출할 것”을 “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제출할 것”으로 하며, 제3호중

“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전”을 “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설치·시공자는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전에”한다.

제 7 조(계량기등의 관리) 제1항중 “지역 난방사업자는 지역난방공급지역(기타 지역은 공동주택관리자)내의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년1회이상”을 “공동주택관리자는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협조를 얻어 월 1회이상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역난방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역난방 공급지역내에 설치된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 현황 등을 매년 6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(계량기등의 관리) 제2항중 “전항의”를 “제1항의”로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계량기 및 온도조절기의 설치·시공자는 제품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전에 해당기기에 대한 수리부품 보유기간 및 공급가격, 수리비용 등을 공동주택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 개정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.

주택회보